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유사기금운용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별도 구분 관리하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·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조례명을 기금통합 제명으로 변경
 - “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”를
 - “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로
- 기금관리에 있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“청소년육성기금”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금 별도 구분관리 규정 삭제
-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 규정 정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구분관리 해오던 것을 유사기금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